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재원: 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용도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유효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에 있어서 농업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농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부. 끝.